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등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490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웹소설 정의 신설	3
2.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6
3.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한 유통질서 금지 행위 규정	10
※ 참고자료	
1. 도서정가제 개요 및 연혁	13
2. 관련 협회 의견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2. 2.

다. 회 부 일: 2024.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웹툰, 웹소설 등 신생 웹 콘텐츠 산업의 경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바, 산업 특성상 작품 생산 및 소비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허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음.

이에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또한 산업 내 출혈 경쟁 등으로 해당 산업군의 유통사가

저자 및 출판사에 그 비용을 전가시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22조제7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웹소설 정의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웹소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웹소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¹⁾은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전자출판물로 정의하고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웹소설, 웹툰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웹툰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²⁾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웹소설은 법률에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개정안은 신산업인 웹소설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웹소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³⁾에서 전자책(e-book) 등 일반적인 전자출판물과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웹소설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웹소설의 정의는 전자책(e-book)과 같은 일반적인 전자출판물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IP 비즈니스 기반의 웹소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웹소설은 다른 콘텐츠와 구분되는 ① 웹으로 매개 ② 웹으로 최초 공개 ③ 소설 형태라는 3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웹에 최초로 공개되는 소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웹소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로 정의하고 있어 웹소설의 3가지 속성 중 웹으로 최초 공개라는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자책(e-book)은 정보통신망에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3) 2022년 기준 웹소설 시장 규모는 1조 390억원이고, 웹소설 이용자 수는 약 587만명임(출처: 2022년 웹소설 분야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 유통 및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종이책으로 이미 출간된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자책(e-book)도 웹소설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임.

2.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제6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 5. (생략) <u><신설></u> ⑧ (생략)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2. ~ 5. (현행과 같음) 6.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고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작권자에게 판매하

는 간행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등에 대하여는 15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도서정가제는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양질의 출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7년부터 출판 및 서점업계 간 자율협약으로 실시해 오다가 대형마트, 인터넷서점의 대량 할인 판매로 자율협약이 무력화됨에 따라 2003년에 법제화되었음.⁴⁾

[도서정가제 개요]

도입 취지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내용	발행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단,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조합하여 정가의 15% 이내 할인은 허용하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발행 후 12개월 경과시 정가 변경 가능
적용 대상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서 전자책, 웹툰, 웹소설 등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또는 전자출판물인증번호(ECN)를 발급받은 전자출판물 포함
규제 재검토	3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폐지,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 의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7조의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웹소설 및 웹툰은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달리 연재 형태로 발행되고 작품 회차당 정가⁵⁾가 낮아 작품 간 정가 차이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인기 작품보다 비인기 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할인 판촉 마케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도서정가제 적용으로 인해 대폭적인 프로모션이 어려운 상황임.

4) 주요설명 및 상세연혁 [참고자료] 참조

5) 네이버시리즈 및 카카오페이지의 회차당 소장 정가: 웹소설 100원 내외, 웹툰 400원~500원 내외

이에 개정안은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에서 웹소설 및 웹툰을 제외함으로써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웹소설 및 웹툰 업계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와 저자 양자의 혜택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웹소설 및 웹툰에 한정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조치는 종이 출판물이나 기타 순수 전자출판물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해 민관협의체 합의로 결정된 사항⁶⁾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웹툰 및 웹소설의 특성⁷⁾을 고려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 결정 사항을 살펴보면, ‘웹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해 도서에서 제외하는 방안’ 및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웹소설’의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일반 ‘전자출판물’과 혼동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⁸⁾

따라서 웹소설 및 웹툰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조치는 현행법 상 전자출판물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웹콘텐츠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제27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에 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폐지, 강화·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규제 검토에서 결정된 사항은 ‘종이책 기반 전자책은 대체재적 성격을 고려해 종이책과 동일하게 규율하되, 웹콘텐츠는 특성을 고려해 도서에서 제외하거나, 세부사항에 관한 보완이 필요함’이었음(2023.5.18. 민관협의체 합의)

7) 웹툰, 웹소설은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며 산업 특성상 작품의 생산 및 소비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의 중요성이 큼

8) 검토보고서 14p. 참고2 ‘관련 협회 의견’ 참조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현행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따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⁹⁾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전자출판물인증번호, ECN) 또는 「도서관법」 제21조¹⁰⁾의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전자출판물 중에서 웹소설 및 웹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는 웹소설 및 웹툰을 별도로 분류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자출판물인증번호(ECN)의 경우 분류 체계가 존재하나 유료사용으로 인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만 부여받는 출판사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도서정가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웹소설 및 웹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 「도서관법」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3.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한 유통질서 금지 행위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의 유통사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웹소설 및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의 유통사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웹소설 및 웹툰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할 시 유통사가 무분별한 판매촉진 및 가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저자 및 출판사를 보호하여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중복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각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¹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¹²⁾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¹³⁾은 사업자가

11) 웹소설 및 웹툰의 저자는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기 위해 대부분 CP(Contents Provider)사(출판사)를 통해 플랫폼(유통사)과 계약을 맺고 있음.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⁴⁾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플랫폼인 유통업자가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율 가능하여 중복 규제 우려가 있으며, 다만 동법들의 적용이 어려운 중소형 유통업체까지도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판문화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예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므로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조항을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⁵⁾

문 의 처
02)6788-5380

14) 다만,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니거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지 않음.

* 안전지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으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15) 현행법은 사채기 금지 등 유통질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도서정가제 개요

- 법적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 도입 취지 : △ 저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
- 내 용 : 발행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 (간행물 정의)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및 ISBN(국제표준도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부여) 등을 표시한 것

- 단,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물품, 마일리지, 상품권 등)을 조합하여 정가의 15% 이내 할인은 허용하되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출판사가 정가 변경 가능
- 적용 대상 :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로서 전자출판물 포함
 - *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도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중고 간행물, 국내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외국 발행 간행물은 제외
 - 웹툰, 웹소설 등 웹콘텐츠도 ISBN(또는 ECN) 등을 발급받는 등 요건을 갖추어 간행물에 해당되면 적용대상임
- 제도 재검토 결과 : 현행 유지하되, 웹콘텐츠에 대해서는 별도 규율방안 모색
 - *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명시(출판법 제27의2) / 금번시한 : '23.11.20.

□ 도서정가제 연혁

- ('77.12월) 출판·서점업계, 자율협약으로 정가판매제 시행
- ('03.2월) 대형마트, 인터넷서점의 대량 할인으로 자율협약이 무력화됨에 따라, 서점조합연합회의 입법 청원으로 출판·인쇄 진흥법 제정, 도서정가제 법제화
- ('08.1월) 오프라인서점 차별 삭제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 5년 한시적 시행 조항 삭제, 신간(18개월 이내)만 적용, 온라인·오프서점 동일하게 10%할인 허용
- ('12.7월) 전자책 정가제 본격 적용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14.1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 * 적용 범위 확대(발행 후 18개월 이내 → 모든 간행물), 할인을 인하(19→15%), 규제 재검토 조항 신설 등
- ('22.2월) 규제 재검토에 따라 개선 반영된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 * 재정가 가능 기한 축소(발행 후 18개월→12개월), 과태료 상향(300만원→500만원) 등
- ('23.8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근거를 명시하는 법률 조항 신설

참고 2

관련 협회 의견

명칭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1인출판 협동조합 (2.7.)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방식은 출판산업이라기 보다는 정보통신산업의 영역에 가까워 ‘웹소설’의 정의를 출판법에 규정하는 것은 반대하며, 부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위한 편법적인 법률 개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이라는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기존 출판 시스템을 뒤흔들 여지가 있음
대한출판 문화협회 (2.14.)	- 웹툰·웹소설은 출판저작물의 영역에 포함되며 온라인 시장에 특화된 창작물임. 개정안대로 웹소설을 정의하게 되면 동법 제2조4의 전자출판물과 구분이 모호해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창작물의 발행 방식 제한으로 권리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 있음 - 도서정가제 헌법소원 결정(2020헌마104)에서 ‘전자출판물과 종이출판물은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전자출판물만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할 경우 양자의 상호보완 관계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전자책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 플랫폼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기능이 필요하기에 도서정가제를 모든 출판물에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출판산업 발전, 건전한 출판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할 때 철회되어야 함
한국출판인 회의 (2.15.)	(제2조제10호) ‘웹소설’의 경우 관련 업계 내외부적으로 그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음. 웹소설의 정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 유관 산업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나 업계와 긴밀한 소통 과정 없이 발의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개정안의 ‘웹소설’ 정의는 광의로 정의되어 ‘전자출판물’(법 제2조제4호)과 구분할 수 없어 개정 반대 (제22조제7항제6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제도의 유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고, 적용 제외 대상은 출판산업 생태계와 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영역의 간행물만 대상으로 포함된 것임. 신설된 조문은 유관산업에 끼칠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도서정가제 입법 취지인 독과점 방지, 문화 다양성 보호 등의 목적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반대 (제23조제1항제4호) 본 조항의 신설취지가 이미 웹소설·웹툰을 적용 예외에 포함할 때 발생할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임. 웹소설 업계의 유통구조가 다양하고, 업계 내부적으로도 적용예외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개정 반대 - 이외에도 신설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조항이 없어 법 시행에 실효성이 없을 우려 있음

한국창작 스토리작가협회 (2.15.)	• 웹소설 정의 규정이 모호함 - 실제 웹소설은 'EPUB' 또는 '이미지', '디지털 문자로 직접 플랫폼에 적는 형태'로 제작되어 정보통신망 상의 플랫폼에 유통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재' 형태로의 유통임. 따라서 제작 형식과 “연재” 형태로의 유통을 정의에 명시할 필요 있음
한국전자 출판협회 (2.16.)	• 웹소설에 대한 정의와 창작자 보호 조치는 필요하나, 웹소설 업계의 현실(낮은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는 부적절
한국웹소설 작가협회 (2.16.)	• (제23조제1항제4호) 현재 플랫폼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할인을 강요하는 상태임. 따라서 ‘합의’는 형식에 그치고, 할인 비용이 작가에게 전가될 우려 있음. 할인 등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창작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규정 전면 재검토 필요